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혜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본 교육교재는 **사회적기업 청밀**과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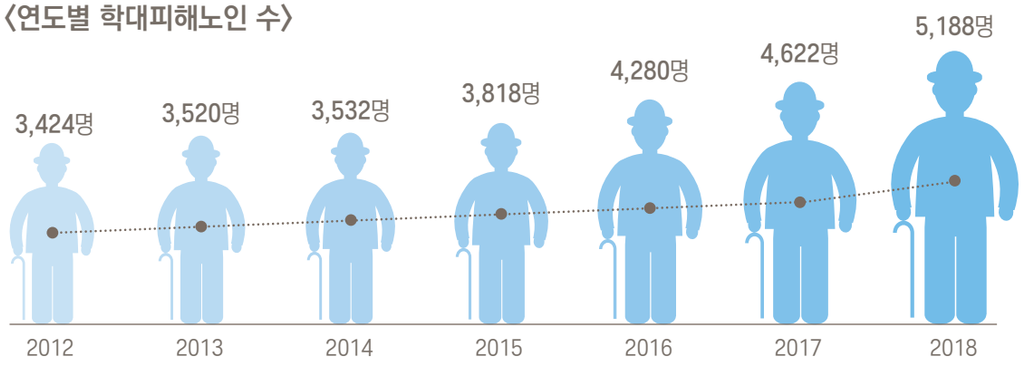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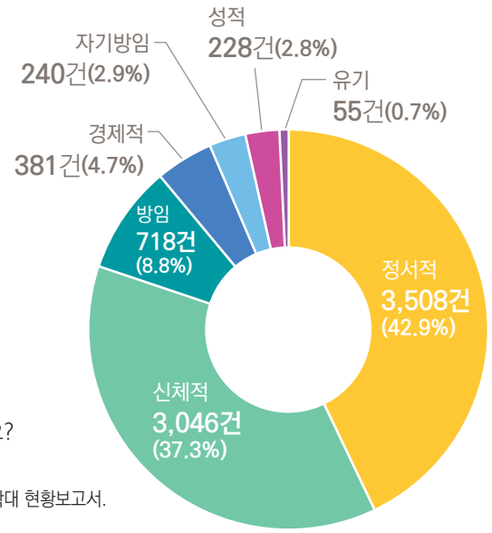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❶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❷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❸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❹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 · 억압 · 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 장치 · 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 · 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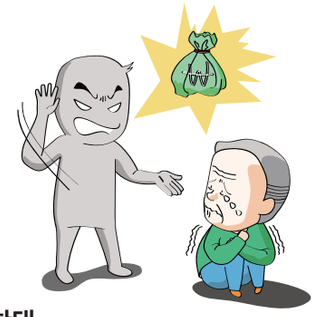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윔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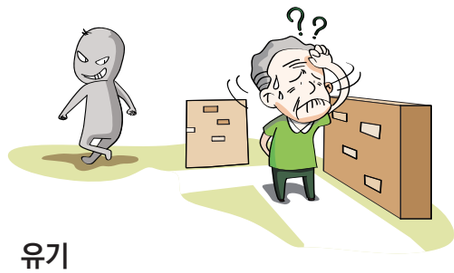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예측징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D노인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아내인 H노인에게 술을 마시면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도 술이 깨면 정말 다정한 남편이기에 H노인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큰딸은 이런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부모님을 거의 집에 가두어 놓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D노인이 술에 취해서 어린 손녀들까지 때리려고 하여 집에 온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예측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할퀸 흔적, 화상 흔적, 묶인 흔적
-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수준의 변화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최근 J노인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 노인종합복지관 H사회복지사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힘들다며 아무도 본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등 같이 살아도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털어 놓으셨다. 따로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손자들조차 자신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따돌림이나 소외되고 있음을 시설 종사자에게 고함
- 가족, 동료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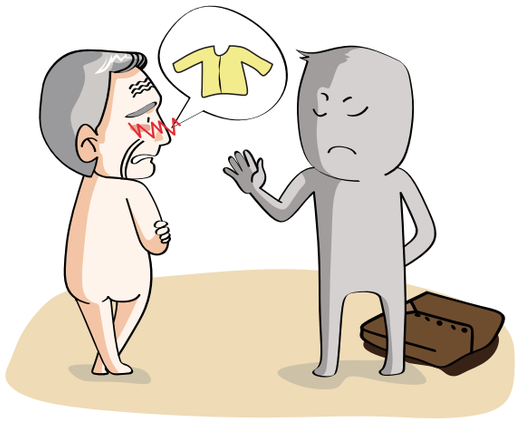

거동이 불편한 A노인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손녀가 게임중독에 빠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쏟아내곤 하였다. 손녀가 A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들을 하였다. 다행히 상황을 목격한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림
-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항문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에게 말함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부부는 부양을 전제로 큰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 시켜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음식도 자기 식구들이 먹는 것보다 소홀히 대접하기 시작했다. 또한 K노인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은 현재 부양비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고 이런 사실이 친척들에게 소문이 날까 창피하다며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해왔다.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챔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도시락 배달을 위해 E노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좋지 않다. 악취가 나고 계절과 맞지 않은 옷가지들이 쌓여있는 등 불결한 환경에 살고 계신 데다가 심지어 상한 음식을 드신 흔적이 곳곳에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음식 양을 줄이고 있다고 하셨다. 사회복지사는 E노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 중이다.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
- 땀띠, 염증, 욕창,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자기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예측징후〉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05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 · 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서 작성의 예

〈이관 시 필수 전달내용〉

· 접수일시: 1월 27일 15시
· 상담원 이름: 김수진
· 신고자 이름: 홍길동
·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 학대피해노인 이름: 홍철수
·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 학대행위자 이름: 이영희
· 접수내용: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그러한 학대피해노인을 보며 무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기도 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06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G노인이 알코올중독증이 있는 손자에게 돈을 갈취 당하고 목을 졸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하는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문의**를 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후 복지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노인과 학대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인은 손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있고 아들이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상담을 거부하였으나, 사회복지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설득 끝에 손자의 학대행위와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행위자**인 손자와 직접 **상담**을 시도하였다. 학대행위자는 노인에게 술심부름을 시킨 것은 인정하였으나 학대행위에 대한 사실은 부인하였다. 이후 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덜 마셔보겠다며 연락이 두절되었다.

상담원은 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인에게 손자를 피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을 권유 하였으나, 당장 시설이나 쉼터로 들어가는 것은 싫다고 하여 아들 및 다른 자녀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윗집 이웃과 다른 자녀가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기로 하였다. 몇 주 후 노인은 다른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손자의 **알콜중독증 치료와 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또한 최초 신고자인 사회복지사도 학대피해노인에게 안부전화를 하며 노인의 안전확보에 협조하였다.

0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2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3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상담

0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05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06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7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Q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이용시설의 학대행위자는 시설 이용 노인 혹은 노인과 관련된 가족, 동료 노인, 외부인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장과 직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취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결과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인권교육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집합교육(연 4시간 이상) 또는 인터넷 교육(연 6시간 이상) 이수

교육결과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도(노인복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08 노인학대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 징	
반복적인 진술	-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전두엽의 기능감퇴로 같은 이야기 되풀이 - 지나치게 자세히 진술 - 심적 압박, 학대행위자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우려로 진술 번복
학대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을 탓함	-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상황을 장황하게 진술 - 학대행위자가 자녀일 경우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림 - 학대행위자의 행동을 합리화함 - 양가감정 존재(학대행위자(자녀)가 겪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과 더 이상의 학대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
정확한 진술이 어렵거나 연락을 끊음	-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 학대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학대사실을 정확하게 진술, 서술하기 어려워함 - 갑자기 다른 말을 하며 횡설수설함 -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 갑작스럽게 상담 중단하거나 연락 끊김

대처방법
-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일 경우 학대행위자를 향한 학대피해노인의 걱정, 불안 등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 필요
- 간단명료한 형태의 질문 제시,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함
- 학대피해노인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림
- 진술 도중 끼어들거나 상담원의 의견을 장황하게 피력하지 않도록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범죄적, 처벌적 접근보다 현재 상황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임을 안내

학대피해노인 상담 TIP

학대피해노인이 직접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를 신고한 경우,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상담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대피해노인을 향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참 힘드셨을텐데, 용기 내어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군요. 이제 안심하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르신께서 겪으신 상황을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OOO(학대행위자)에게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많이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다."
"어르신, 자식(학대행위자)으로서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한다고 하셨는데, 충격이 크시겠지만 OOO(학대행위자)가 어르신께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것이 있으세요?"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TIP

〈재가복지시설에서〉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특히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정에서 이뤄지는 노인학대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해진 노인학대는 부끄러운 가정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부부간, 고령의 자식 및 며느리 등에 의한 노노(老老)학대의 경우 사례가 증가하는 바, 경미한 경우라도 즉시 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끼리의 다툼, 폭언, 따돌림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힘쓰도록하며, 신입직원인 경우 필수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관은 다수의 노인이용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라 장시간 노인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자들은 노인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키워야 하며, 특히 아웃리치사업(경로당 활성화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재가복지사업 등)에 배치된 직원인 경우에는 노인학대 예측징후를 알고,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인지저하 및 치매증상)을 가진 노인들의 증가로 인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노인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하며, 노인의 이상행동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노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 개입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노인학대 유형이 있나요?

주로 정서적 학대사례가 발견되기 쉬운데 이용자들끼리 한 사람을 따돌린다거나 폭언 및 막말을 하는 경우 해당 노인에 대해 적극적·즉각적인 개입, 상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자로서는 친밀감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할 수 있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오랜 기간 알아온 사이더라도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받아 불쾌감을 느꼈다는 경우도 가끔 보고되는 바, 특히 성적인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학대예방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소송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금전적인 거래는 은행을 통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부양 등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09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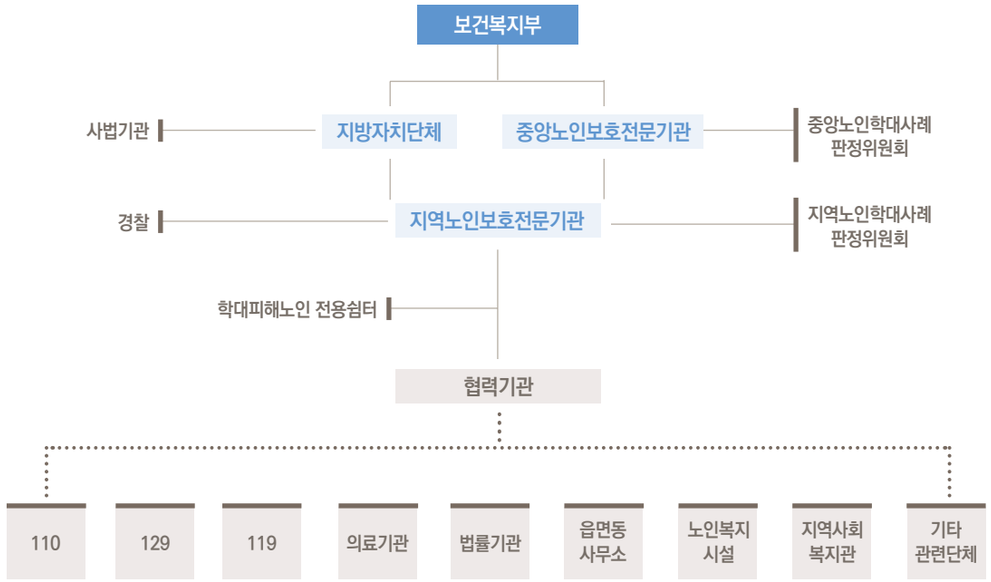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 개선사업
- 효행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신고·상담

전화, 서신 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상담)됨

정보파악

상담원은 신고(상담)자로부터 관련한 정보 파악(신고(상담)자 이름, 연락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및 거주지, 신고내용 등)

사례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의심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사정을 합니다.

노인학대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사례 또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로 판정합니다.

사례평가,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양로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종결 및 사후 관리

사례 종결 후 에도 일정기간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전화 및 방문)를 진행합니다.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9쪽 참고)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서비스내용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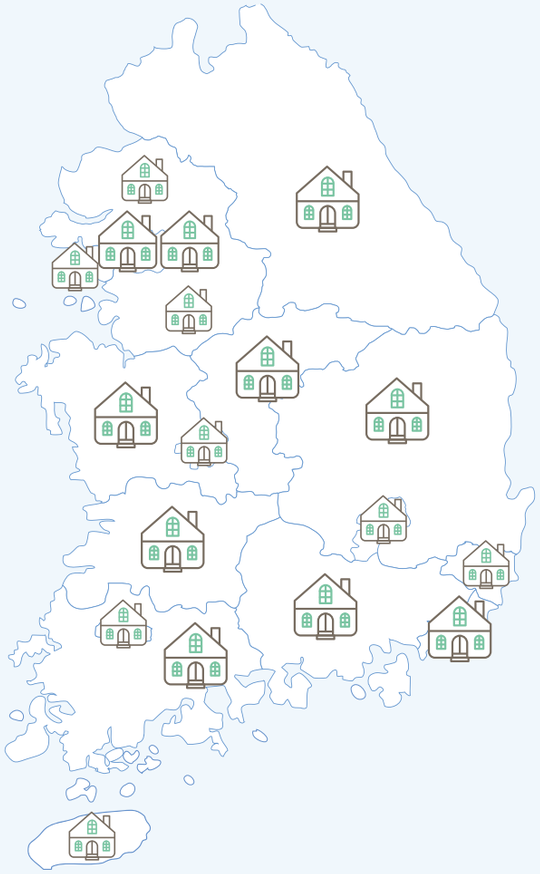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벌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02)921-1389
	서울서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2)3157-6389
부산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	**대구남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대구북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053)357-1389
인천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6-8792
	인천서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69-0533
광주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울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032)683-138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268-1389
강원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744-1389
충북	**충북***	청주시,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
	충북북부	충주시,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
충남	**충남***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041)734-1389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덕진구),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273-1389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전남	**전남동부***	순천시,여수시,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061)281-2391
경북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북부*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경북서남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054)436-1390
경남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쉼터 운영